

①

보건 제 호
년 월 일

_____님

아이치현 보건소장

취업제한등의 통지서

당신은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를 대하는 의료에 관한 법률(이하 [법]이라고 함)제 6조에 규정한 결핵에 감염되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.

따라서 법제 18조 제 2항 규정에 근거하여 하기 2와 같이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.

이 취업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제 77조 제 4항 규정에 의해 50 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또한 법제 18 조 3 항 규정에 의해 당신은 이 취업제한 기간에 있어서 보건소장에 대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
1 증상

(1) 증상

기침,	가래,	발열,	가슴통증	호흡곤란, 기타(), 없음
(2) 진단방법	_____			
(3) 초진년월일	_____			
(4) 진단년월일	_____			

2 취업제한 내용

(1) .
접객역 기타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는 업무

(2) 병원체를 보유하지 않을 때까지 또는 그 증상이 소실 될 때까지

3 기타

해당 감염증의 증상이 소실 된 때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 당:보건지원과